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번호 | 3118 |
|------|------|

2022.03.3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3월 10일, 김혜련 의원(찬성자 12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3.3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혜련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21.10.19.) · 시행(2022.4.20.)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정비하고,

- 서울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상품권 권면발행 발행방법 변경,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 책임을 명시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판매대행점’ 이 상품권의 발행·판매, 충전·환전, 가맹점 관리 및 상품권 운영 시스템 관리를 대행토록 함(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 나. 상품권의 발행방법 중 권면금액을 삭제함(제4조제4항제2호 삭제).
- 다. 서울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 계좌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라.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 마. 등록이 취소된 업체의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3항).
- 바.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토록 함(안 제5조제4항).
- 사. 가맹점 등록취소 강행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5항).
- 아. 상품권의 발행방법 중 권면금액 삭제에 따른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 으로 함(안 제8조제4항).
- 자. 판매대행점의 위탁사업에 따른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5항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과 상품권 권면금액의 삭제, ▶ 가맹점과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주요 개정 사항

-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와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였으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2020.5.1.)되면서 상품권의 발행과 판매 대행점, 가맹점의 등록과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이 법제화되었음.
- 그러나 상품권 운영자금(상품권 발행·판매·환전 자금)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좌가 아닌 위탁업체의 계좌로 선불충전금을 관리·운영하면서 선불충전금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이나 낙전수입¹⁾의 위탁업체 귀속, 위탁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상품권 운영자금의 관리부실 우려가 제기되었음.
 - 상품권 발행의 법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선불충전금과 이자 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발행·운영 업무를 맡은

1) 상품권의 유효기간(5년)이 지났으나 환불받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세출로 위탁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경기도 등은 상품권 발행수수료에 대한 예산투입 없이 위해 선불 충전금 발생 이자수익을 위탁업체가 수취하도록 하여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2021.10.19.)하여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 금고에 별도 계정²⁾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신탁업자³⁾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음(법 제4조의2).
- 또한,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간주 규정(법 제7조), ▶등록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제척 기간(법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법 제15조) 등이 마련되었음.

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1)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의 삭제

- 개정안은 조례의 정의(제2조)에서 ‘운영대행사’를 삭제하고, ▶가맹점의

2) 당초에는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 보관·관리토록 하였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목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것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등록 및 취소(제5조), ▶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제8조), ▶ 재정지원의 조건(제11조), ▶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제12조)에서 ‘운영대행사’의 업무를 ‘판매대행점’이 수행하도록 변경하였음.

- 당초 서울시는 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로페이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하 “한결원”)을 상품권 운영대행사로 하고, 제로페이 참여사인 ‘비즈플레이’에 판매대행을 위탁하였음.
-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게만 판매대행점의 자격을 부여하고,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판매대행점이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운영대행사’를 통한 상품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또한, 한결원과의 협약기간이 만료(2021.12.31.)되고, ‘신한컨소시엄’이 새로운 판매대행점으로 선정(2021.11.23.)됨에 따라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음.
- 이에 따라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운영대행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판매대행점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상품권 관련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주체를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음.

(2) 상품권 권면금액의 삭제(안 제4조, 안 제8조제4항)

- 개정안은 기존에 10만원권, 5만원권, 1만원권 등 3종으로 설정한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삭제(안 제4조)하고,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권 잔액에 대한 환불규정을 정비하였음(안 제8조제4항).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 <p>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삭 제></p> <p><삭 제></p> |
| <p>제8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 사항 등) ④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 <p>제8조(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④ -----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 ----- ----- ----- -----.</p> |

- 이는 권면금액의 명시가 필요한 지류나 카드 형태로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최소 1만원에서 70만원의 범위⁴⁾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형태로만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어 별도의 권면금액을

4) 서울사랑상품권의 1회당, 월별 구입 한도액은 70만원이며, 보유한도액은 상품권 권종(광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당 200만원임.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그러나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노령층이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지류나 카드 형태로 상품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회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실물카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⁵⁾이 발의되었으므로 권면금액의 삭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3) 상품권 운영자금 관련 규정의 신설(안 제4조의2)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이용자의 예탁금과 운영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맞춰 상품권 운영자금을 서울시 금고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금고은행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며,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음.
- 이는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운영자금 운용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관리할 수 있고, 판매대행점과 별도의 협약이 없더라도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불충전금 이자수익이나 낙전수입을 서울시에 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41,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 또한, 판매대행사가 경영난 등으로 인해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여 상품권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고 상품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다만, 상품권 운영자금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반기별로 운영·관리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기보다는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4) 가맹점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 개정안은 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신청 간주, ▶제한 대상 세분화, ▶등록 여부의 결정기한 및 결과 통지, ▶현황 공개,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취소, ▶등록 취소된 자의 재등록 제척기간 등의 규정을 추가하고 있음.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같음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p> <p>1. ~ 4.(생략)</p> <p>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p> | <p>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 ----- ----- -----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서----- -----</p> |

있도록 함에 따라, 별도의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기존 가맹점이 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⁶⁾.

- 이에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희망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처리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임.
- 또한,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여 등록진행 상황에 대한 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신청절차의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음.

② 가맹점 등록 제외대상 세분화 등

- 개정안은 가맹점 등록 제한대상을 종전의 업종별 구분에서 사업체별 구분까지 확대하고 있음.
- 종전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법률에 따른 제한업종(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과 조례에서 정하는 제한업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을 가맹점 등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

6) 「지역사랑상품권법」부칙을 통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 신청 없이 가맹점 지위를 유지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부족, 등록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것임.

-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점포 여부 등의 개별 사업체 특성을 기준으로 가맹점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법」 또한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과 등록 취소 관련 규정에 사업체별 구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음.

③ 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

- 개정안은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현황을 반기별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음.
- 종전에는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해서만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가맹점 등록 현황을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한 것임.
- 이는 상품권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투명한 가맹점 관리를 통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다만, 상품권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 주기를 분기별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④ 등록 취소 강행규정 및 재등록 제척기간 도입

-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 종전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가맹점에 대한 관리부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음.
- 이에 위법적인 가맹점 등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신청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되어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5)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명확화(안 제8조제5항)

- 개정안은 판매대행점이 상품권 발행과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과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였음.
- 이는 판매대행점의 변경과정에서 기존 업체인 한결원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업무상 기밀 등을 이유로 가맹점과 사용자에 대한 일부 정보를 서울시와 신규 업체(신한컨소시엄)에게 제공하지 않아 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차질을 빚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점을 고려한 것임.
 - 기존에 상품권 운영대행사였던 한결원은 “서울시와 명시적인 개인 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을 맺지 않았고, 가맹점 정보 모두가 상품권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정보는 서울시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개인정보위원회가 한결원이 상품권 운영대행사 업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서울시에 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함(2022.3.4.)에 따라 분쟁이 종결되었음 [참고자료].

- 개정안은 상품권의 발행·판매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다만, 현행 조례(제8조제3항)에도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규정의 여지가 있음.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상품권 제도와 조례의 완결성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고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품권 운영자금의 운영·관리 현황과 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주기를 분기별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권면금액의 삭제에 대해서는 향후 카드나 지류형태로 상품권이

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취약계층의 상품권 이용편의를 확보를 위해 안 제4조제4항에서 삭제된 상품권의 권면금액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조례의 시행을 조례 공포일에 맞추도록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상품권 권면금액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함(안 제4조제4항).
-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4월 20일에서 조례 공포일로 수정함(부칙).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3118 |
|----------|---------|

제안년월일 : 2022년 3월 30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취약계층의 상품권 이용편의를 확보를 위해 안 제4조제4항에서 삭제된 상품권의 권면금액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조례의 시행을 조례 공포일에 맞추도록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상품권 권면금액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함(안 제4조제4항).
-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4월 20일에서 조례 공포일로 수정함(안 부칙).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 ③ (생략) <u>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u></p> <p>2. <u>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 <p>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u></p> <p><삭 제></p> <p><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이 조례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u></p> | <p>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u></p> <p>2. <u>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서울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서울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하며,”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업종으로서”를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서”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단서를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2호 중 “제한업종”을 “제한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3항과 제4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시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을 “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제3항 중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각각 “판매대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을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동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11조 중 “공동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
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
의 선정·관리 사업

② ~ ③ (생략)

제11조(재정지원의 조건)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자
치구를 지원을 할 때에 제9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8조에 따른 공동 운영대행사 이용 등을 조
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상
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
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생략)
2. 운영대행사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생략)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
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
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및 지원) ① -----

-----.

1. ~ 3. (현행과 동일)
4. -----
----- 판매대행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재정지원의 조건) -----

----- 판매대행점 -----
-----.

제12조(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

-----.

1. (현행과 같음)
2. 판매대행점 -----
3. (현행과 같음)